

2020년도 예산안 등 국회 심의 주요 내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분석관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함.
이하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등*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결과, 재정건전성의 변화 등
국회 심의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봄

* 예산안등: 「국회법」 제85조의3상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미

수입 측면 심의결과

● 총량 변동: 총수입 기준 1,809억원 순감(482.0조원 → 481.8조원)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감액	순증감
회계	77,120	△ 42,279	34,841
기금	4,045	△ 219,795	△ 215,750
합계	81,165	△ 262,074	△ 180,909

자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주요 증감 내역

- 공무원연금기금의 퇴직수당 부담금 관련 수입 감액: 퇴직수당 지출계획액 감액 (중앙공무원 △1,105억 7,400만원, 지방공무원 △1,894억 2,600만원)에 연동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부담금 수입 감소분(△1,894억 2,600만원) 감액
- 세법 개정안 심사시 수정내역 반영: 개별소비세(△173억원), 부가가치세(△67억원) 등 7개 세목의 국세수입 예산 총 △422억 3,000만원 감액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상승 반영: 시장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환경개선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512억 1,200만원 증액

지출 측면
심의결과

● 총량 변동: 총지출 기준 1조 2,075억원 순감(513.5조원 → 512.3조원)

※ '16예산안 △0.3조원, '17예산안 △0.2조원, '18예산안 △0.1조원, '19예산안 △0.9조원에 이어 5년 중 가장 큰 감소 시현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감액	순증감
회계	4,749,089	△ 6,044,038	△ 1,294,949
기금	3,118,331	△ 3,030,931	87,400
합계	7,867,420	△ 9,074,969	△ 1,207,549

자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12대 분야별 증감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A)	2020년 확정예산(B)	증감(B-A)	
				증감률	증감률
1. 보건·복지·노동	161.0	181.6	180.5	△1.1	△0.6
2. 교육	70.6	72.5	72.6	0.1	0.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5.4	17.0	17.3	0.3	1.8
3. 문화·체육·관광	7.2	8.0	8.0	0.0	0.0
4. 환경	7.4	8.8	9.0	0.2	2.3
5. R&D	20.5	24.1	24.2	0.1	0.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23.7	△0.2	△0.8
7. SOC	19.8	22.3	23.2	0.9	4.0
8.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0.5	2.4
9. 국방	46.7	50.2	50.2	0.0	0.0
10. 외교·통일	5.1	5.5	5.5	0.0	0.0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0.8	△0.1	△0.5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79.0	△1.5	△1.9
※ 지방교부세 제외시	24.1	28.2	26.8	△1.4	△5.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19.12.10.을 바탕으로 재작성

- 주요 증가분야: 증가규모 기준 SOC 0.9조원(4.0%), 농림·수산·식품 0.5조원(2.4%), 환경 0.2조원(2.3%) 순
 - SOC 분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 유형별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 이후 3년 연속으로 증가규모·증가율 1위 유지
 - 농림·수산·식품 분야: 매년 소폭 증액되는 수준이었으나, 금년에 예비비로 편성됐던 쌀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이 개별 사업으로 신설되면서 이례적으로 대폭 증가
- 주요 감소분야: 감소규모 기준 일반·지방행정 △1.5조원(△1.9%), 보건·복지·노동 △1.1조원(△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2조원(△0.8%) 순
 - 일반·지방행정 분야: 과다 계상된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 9,500억원의 감액으로 큰 폭 감소된 것이며, 같은 이유로 2016년 이후 매년 감액규모 1위
 - 보건·복지·노동 분야: 국민연금 급여 및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지급 계획액이 7,000억원이 감액되면서 큰 폭 감소된 것으로, 2019년 이후 2년 연속 유사 추세

● 주요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	세부사업	증감내역			
			예산안(A)	확정예산(B)	증감규모(B-A)	증감율((B-A)/A)
증액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784,614	4,031,608	246,994	6.5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67,983	173,409	105,426	155.1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327,105	1,418,462	91,357	6.9
감액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9,644,200	9,399,200	△245,000	△2.5
	중소벤처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000	800,000	△200,000	△20.0
	법무부	국가배상금지급	300,000	150,000	△150,000	△50.0

자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본회의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주요 증액 사업

-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단가 인상,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2469억 9,400만원 증액
-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0개소 추가(400개소 → 530개소) 등을 위해 1,054억 2,600만원 증액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 확대(보험료 예상수입의 18.4% → 19.0%) 소요 913억 5,700만원 증액

- 주요 감액 사업

-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연내 집행규모 등 고려하여 2,450억원 감액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기존 집행실적 및 미투자 대기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2,000억원 감액
- 법무부 ‘국가배상금지급’: 구로 분배농지 사건 확정판결이 12월 3일 선고되면서 배상금도 확정(660억원)됨에 따라 예산 1,500억원 감액

재정건전성 변화

● 재정수지

정부안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0.6조원 개선. 두 재정수지 간 차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기금 급여지급 계획액 0.4조원 감액에 기인

● 국가채무

국가채무 전망은 805.2조원으로 예산안 대비 0.4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모두 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 감소에 기인

(단위: 조원, %, %p)

구분	예산안(A)	확정예산(B)	변동(B-A)
통합재정수지	△31.5	△30.5	1.0
관리재정수지	△72.1	△71.5	0.6
국가채무	805.5	805.2	△0.4
GDP 대비 %	(39.8)	(39.8)	(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19.12.10.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 심의결과

● 특별회계 및 기금 신설·폐지

- 특별회계: 5년 한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 후 관련 예산 2.1조원 이관(특별회계 수: 19개 → 20개로 2017년 이후 3년만에 증가)
- 기금: 기존 7개 직불제 통합 개편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폐지 및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신설 후 관련 예산 2.6조원 이관 (기금 수: 67개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동일)
- ※ 다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및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신설의 근거 법률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서 12월 24일 현재 본회의 계류 중

● 주요 부대의견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기 탈락사업의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주문
-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국회 보고 주문
- WTO 개도국 지위 포기예 따른 농업분야 피해 예방 주문
- 모태펀드 출자 조합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 활용현황 국회보고 주문

시사점

● 예산안등 의결시기 관련

- 자동부의제도 시행(2014년 5월) 이후 첫해를 제외하고 법정기한(12월 2일) 도과
- 다만, 제도 시행 후 매년 정기국회 회기 중인 12월 초 예산이 확정됨

구분	'15 예산안	'16 예산안	'17 예산안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본회의 부의일	12.1	12.1	12.1	12.2 ¹⁾	12.1	12.1
본회의 상정·의결일	12.2	12.3	12.3	12.6	12.8	12.10 ²⁾

주: 1) '18 예산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를 거쳐 12월 2일로 부의일자 연기
2) 다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2건 중 16건은 12월 24일 현재 본회의 계류 중(6건만 12월 10일 및 23일 의결)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대응 관련

- 정부는 2019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부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 전망에 따라 2020년도 동 회계 수입에 전년도이월금 비목 △2,000억원을 추가 계상
 ※ 전년도이월금 △2,000억원 계상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 2,000억원을 감액하여 이월 세출 예산의 재원 마련
- 이는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나, 음(-)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에서 이례적 → 향후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의 발생 자체를 지양할 필요